예 산 총 칙

2015년도 간주예산 4 차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243,949,858	7,318,496
일반회계		235,011,629	7,050,349
특별회계		8,938,229	268,147
	기타특별회계	8,938,229	268,147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71,976	11,159
	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129,811	33,894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361,510	10,845
	주차장특별회계	5,666,072	169,982
	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	296,229	8,887
	기반시설특별회계	1,112,631	33,379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- 제 3 조 예산중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조서"와 같다.
- 제 4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6,544,121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5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 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